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 1. 26 선고 2021가단2242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우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C 목장용지 612㎡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8. 4. 22. 접수 제101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판사 권은석

별지

청 구 원 인

1. 신분관계

원고는 원고 소유의 제천시 C 목장용지 612㎡(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만 합니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8. 4. 22. 접수 제10118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근저당권설정자로 채무자인 소외 D의 물상보증인이며, 피고는 근저당권자입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경위

가. 원고는 1998. 4. 중순경 소외 D이 소외 E로부터 투자를 받는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당시 위 D은 투자받은 돈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한 후 그 토지를 위 E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늦어도 1998. 말경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를 말소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나. 그에 따라 원고는 1998. 4. 22.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D과 함께 위 E를 만났고, 위 E가 자신의 동생인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해 달라고 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D을 채무자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되었습니다.

3. 주채무의 소멸 등

가. 원고는 위 D이 약속한 1998.말이 지나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지 않음에 따라 말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위 D로부터 위 E에게 도박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변제독촉에 시달려 원고를 속이고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

1) 갑제1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나 그 도박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변제 이후 위 E와 연락이 되지 않아 피고로부터 말소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위 D이 위 E에게 채무를 변제한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가사, 위 D이 위 E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박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 할 것이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경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5234 판결 참조)

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23년이 지난 상태로, 그동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 등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